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14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146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가단177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 선고 2016. 2. 1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가단1776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109㎡ 중 41/74 지분에 관하여 1992. 8.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4. 8.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10. 6.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이 2015. 9. 10. 11:25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5. 8. 18.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는데(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8. 5.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8. 1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도 불출석하였다.

다. 그 후 당심의 제2차 변론기일이 2015. 9. 24. 11:35으로 지정되었고,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9. 23.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는데,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원고 역시 불출석하였다.

라.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5. 12. 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 중 두 번째 쌍방 불출석 처리된 기일인 2015. 9. 24.로부터 1월 이내인 2015. 10. 24.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15. 10. 25.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은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병렬

판사강부영

판사최선재